경영유의사항 등 공개

1. 금융기관명 : 신한은행

2. 제재조치일 : 2017. 11. 3.

3. 제재조치내용

제재대상	제재내용
기 관	개선사항 1건

4. 제재대상사실

가. 개선사항

(1) 시금고 출연금 집행 및 사후관리 관련 내부통제절차 개선

2012년 상반기중 발생한 금융사고는, 기관고객본부(舊기관고객부)에서 지방자치단체 금고업무를 수행하면서 지역 유관기관 등의 요청에 따른 출연금을 집행함에 있어, ①요청금액이 기재되지 않은 협조 요청공문에 의해 출연금을 집행하는 등 협조요청 증빙의 부실, ②협조 요청기관 외 제3자 계좌로 출연금을 집행하는 등 출연금 집행 관련 내부통제 미흡, ③전금액의 실제 집행 여부에 대한 검증 미흡 등 사후관리 부실 등의 복합적인 원인으로 발생했으므로,

기관고객본부에서는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, 출연금 집행 품의시 요청금액이 명시된 협조 요청기관의 공문 등 세부 증빙자료가 반드시 첨부되도록 하고, 동 자금은 요청기관이 아닌 제3자 명의 계좌에 입금할 수 없도록 통제할 필요가 있으며, 출연금 배정내역에 따라 당초 사업목적대로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여부를 철저히 사후 점검하는 등 관련 규정 및 내부통제시스템을 개선하시기 바람